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 4. 28 규칙 제1163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강사) ①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 강사는 수석강사 1인, 책임강사 3인, 관리강사 1인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 개설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절관의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절교육기관에 강사 및 교재 개발에 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교육비용)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관외 거주 교육수강자
2. 관외 기관·단체 주관의 외국인 교육수강자
3. 성인 심화2·3단계, 다례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4. 전통혼인례, 관·계례(성년례) 신청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명예예절강사 위촉) ① 시장은 전통예절 보급 및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명예예절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예절교육 수강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예절교육관 교육과정(139시간)을 수료한 자
3. 예절관련 자원봉사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
4. 시험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예절강사는 각급 학교 청소년 예절교육 자원봉사를 담당하며,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예절강사 관리) ① 시장은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 활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지원 및 강의 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명예예절강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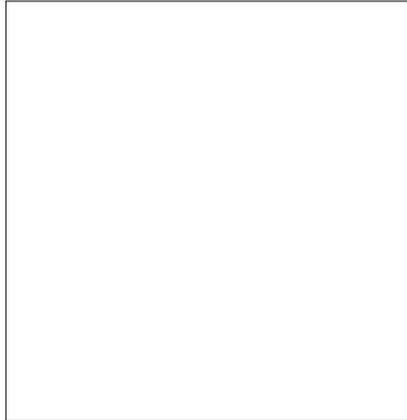
예절관 교육수강료

대 상 자	수 강 료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외 기관·단체 주관의 외국인 수강자 	10,000원	재료비 별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 2단계 프로그램 수강자 	2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 3단계 프로그램 수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례반 프로그램 수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일반, 심화1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계례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심화 2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5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혼인례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심화 3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1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례반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명예예절강사 기록카드



안양시 예절교육관

[2면] 명예예절강사 활동 기록카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본적				전화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직업			
시강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주제: >			명예예절강사 위 추	년 월 일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력	기간		근무처		직위	기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자격증	자격증		취득일	발급처		자격증		취득일	발급처	
단체활동	단체명	직책	가입연월일	탈퇴연월일	단체명	직책	가입연월일	탈퇴연월일		

